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문자 발송 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9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5.
3.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 발송 등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제4항 후단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⑦ (생략)</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u>	<u>⑨ -----제8항에-----</u> -----

현행	개정안
· 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⑩ (생략) ⑪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 용한다. ⑫ (생략)	----- ----- ----- ----- ----- ----- -----. ⑩·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⑫ ----- ----- ----- ----제8항과 제9항을-----.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인과 같이 한글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언어 장애인의 경우 긴급재난 문자에 적시된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문자 등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언어 장애인에 대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가능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 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상용 문자서비스(MMS³⁾ 등)와 달리, 국제·국내 표준에 따라 텍스트만 전송 가능한 단방향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영상을 포함한 재난문자의 요청이 현재의 문자전송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3) Multimedia Messaging Service(사진, 동영상 등 포함)